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11년 5월 20일

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전문위원 김은모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」은 2011년 5월 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 . 제정이유

본 조례안은 마포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,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, 사업추진협의체, 도시디자인 위원회 등 관련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II . 주요내용

- 가. 도시디자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제1조~제2조)
- 나.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사업의 시행 등(제3조~제4조)
- 다. 도시디자인 사업추진협의체 구성(제5조)
- 라. 도시디자인 사업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(제6조)
- 마.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(제7조~제12조)
 -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심의 및 자문대상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위원의 제척·해촉, 소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
- 바. 도시디자인위원회 회의록 등 비치, 자료제출의 요구, 수당 등 및 비밀 준수, 운영세칙(제13조~제17조)

III . 검토의견

동 조례안은 2010.7.15. 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 가 개정됨에 따라

2008. 9. 23. 제정·운영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새로 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에 맞춰 제정하려는 조례로 자치구 심의대상사업 규모를 “1억원 이하”에서 “5억원 이하”로 확대하고,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디자인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는 경우 및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며,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“별표” 「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」을 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 “별표 1”의 형식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을 보면,

- 1) 마포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사업의 시행시 지역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
- 2) 도시디자인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재정적 지원으로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지구 안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관련자에게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·보조 할 수 있도록 하며,
- 3)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서는 도시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과 위원장과 위원의 제척·해촉 그리고 비밀준수 규정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였음.

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, 동 조례안은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에 맞추어 우리 구 심의대상 사업규모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마포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미적 감각이 어우러진 도시디자인 마포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례로 판담됨.

다만, 본 제정 조례안 중 일부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, 안 제12조제1항 중 “5명 이상”을 “5명 이상 15명 이하”로 하고, 향후 사업추진협의체 설치, 재정적 지원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 도시 디자인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18조(시행규칙) “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전문위원수정의견

제정안	수정안
<p>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</p> <p>제12조(소위원회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<u>5명 이상</u>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·의결 한다.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거나 또는 자문에 조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소관 국장이 된다.</p> <p>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11조,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.</p> <p>〈신설〉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</p> <p>제12조(소위원회) ①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<u>5명 이상 15명 이하</u>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.</p> <p>②~ ④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